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2024. 12. 11.(수)

제422회 정례회

제 3 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90
----------	-----

2024. 12. 11.(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이의영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 2024년 11월 15일
- 다.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5일
- 라. 상정일자 : 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 11월 27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의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충청북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의 개정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목적 및 정의 조항 정비(안 제1조 ~ 안 제2조)
-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 (안 제3조, 안 제6조~ 안제8조)
- 스마트농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안 제4조)
- 법정계획인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조항 신설 (안 제4조의2)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구성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5조)
- 위원회 규정의 정비(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 (필요성) 본 조례의 개정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문 및 조례의 지원 범위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타당성) 이에 따라 제명, 용어정의, 스마트농어업 종합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 전체적인 개정사항을 봤을 때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이 조례의 개정으로 체계적인 스마트농어업에 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면밀한 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스마트농어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0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15일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90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15일

발 의 자 : 이의영, 김꽃임, 이옥규, 박경숙,
유재목,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충청북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의 개정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목적 및 정의 조항 정비(안 제1조, 제2조)
-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 (안 제3조, 제6조~제8조)
- 스마트농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안 제4조)
- 법정계획인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조항 신설 (안 제4조의2)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구성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5조)
- 위원회 규정의 정비(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4. 11.
- 협 의 : 농정국 스마트농산과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급변하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스마트농업”을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스마트농어업”이란 농어업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어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어업을 말한다.
4. “스마트농어업데이터”란 스마트농어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문자·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스마트농업”을 “스마트농어업”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스마트농어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이하 “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 중장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어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어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어업 기술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어업 기반 구축
6. 스마트농어업 전문 인력 및 청년농어업인 양성 방안
7. 그 밖에 스마트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농업에 대한 부분은 제4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고, 스마트어업에 대한 부분은 「양식산업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 발전시행계획 수립시 스마트어업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2.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및 청년농업인 양성 방안
3.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10일 이상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스마트농업”을 각각 “스마트농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스마트농업”을 각각 “스마트농어업”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우수농업인 교육기회 제공)” 을 “(우수농어업인 교육기회 제공)” 으로 한다.

제8조 중 “스마트농업” 을 “스마트농어업”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스마트농업의” 를 “스마트농어업의” 로, “충청북도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를 “충청북도스마트농어업육성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마트농업” 을 “스마트농어업”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육성계획” 을 “종합계획 및 육성계획”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스마트농업” 을 각각 “스마트농어업”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u></p>	<p><u>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u>조례</u>는 급변하는 <u>충청북도 농어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u>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조례</u>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u>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u> ----- ----- ----- -----.</p>
<p>제2조(정의) 이 <u>조례</u>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스마트농업</u>”이란 <u>농업 생산성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u></p> <p>3.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스마트농어업</u>”이란 <u>농어업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어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어업을 말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4. “<u>스마트농어업데이터</u>”란 <u>스마트농어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u></p>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6.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및 청년농어업인 양성 방안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수치·문자·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 스마트농어업-----

--.

제4조(스마트농어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의 스마트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 중장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어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어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어업 기술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어업 기반 구축
6. 스마트농어업 전문 인력 및 청년농어업인 양성 방안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7. 그 밖에 스마트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농업에 대한 부분은 제4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고, 스마트어업에 대한 부분은 「양식산업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수립시 스마트어업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2.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및 청년농업인 양성 방안

3.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10일 이상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및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조성,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

-- 스마트농어업-----

--.

1. 스마트농어업 -----

2. 스마트농어업 -----

3. 스마트농어업 -----

4. 스마트농어업 -----

진

-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 6.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 기획, 유통, 광고, 회계, 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 7.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② (생 략)

제6조(지원방법 및 취소·제외 등)

-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의 지원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

- 5. 스마트농어업 -----

- 6. 스마트농어업 -----

- 7. 스마트농어업 -----

- 8. ----- 스마트농어업 -----

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지원방법 및 취소·제외 등)

- ① ----- 스마트농어업 -----

-----.
- ② -----

-----.

1. (생략)
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그 상환 기간 내에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때
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생략)
- ③ (생략)

제7조(우수농업인 교육기회 제공)
(생략)

제8조(기술의 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찾아내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1. (현행과 같음)
2. -----

----- 스마트농어업-----

3. 스마트농어업-----

4.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우수농어업인 교육기회 제공)
(현행과 같음)

제8조(기술의 홍보) ----- 스마트농어업-----

-----.

제9조(위원회) ① ----- 스마트농어업의 ----- 충청북도스마트농어업육성위원회-----
-----.

② ----- 스마트농어업 -----

-----.

1. 종합계획 및 육성계획-----
2. 스마트농어업 -----

3. ----- 스마트농어업 -----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취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문자·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5조(시·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지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시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성지구의 조성 목적

2. 육성지구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에 관한 사항

3. 육성지구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육성지구의 구체적 조성 방안 및 재원 확보방안

5. 육성지구의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육성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육성지구의 명칭·위치·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 ⑨ (생략)

□ 양식산업발전법

제7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

에 맞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농정국 스마트농산과장 황 규 석